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4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9. .
제출자	거창군수

개정사유

상수도요금 납부의 편의를 위한 대 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납부 시 요금할인으로 체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8조의2 신설)

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
- 군수방침(2004. 3. 26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요금의 할인) ① 군수는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당해 납기 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, 그 상한액은 5,000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.